

'97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1997. 11.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7년 10월 25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1997년 10월 27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제52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97.11.1) 상정
제2,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97.11.6~7) 예산안심사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97.11.8) 계수조정 및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기획실장 공우홍)

- 가. 제안이유
 - 세입(보조금, 조정교부금)증가
- 나. 주요골자
 - 예산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제 2 회 추 경 (증△감)	증 감 율(%)
총 계	149,210,842	146,175,146	3,035,696	2.1
일 반 회 계	117,507,324	114,471,628	3,035,696	2.7
특 별 회 계	소 계	31,703,518	31,703,518	0
	의료보호기금	1,596,556	1,596,556	0
	주민소득지원	724,276	724,276	0
	주 차 장	29,382,686	29,382,686	0

- 주요제한
 - 일반회계 : 3,035,696천원(보조금, 조정교부금)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전문위원: 유계한, 허영훈)

- 가. 시민보사위원회
 - 시민생활국 세출내역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문래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비 13억 6,569만 6천 원과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비 9억 7,500만원, 그리고 구 근로자회관 부지매입 연부금 2차 보전금 7억 9,912만 9천원으로 총 31억 3,982만 5천원이 되겠으며, 경정된 예산은 청소관리수도권매립지 2단계 조성공사 부담금 7억 6,112만 9천원이 경정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회 추경예산의 사회복지 사업비는 국·시비 보조금이며 구 근로자회관 부지매입 연부금은 구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이 모든 사업비는 시기적으로 금년내에 집행하기가 어려우므로 금회 추경 예산에서 '98년으로 명시이월 하려는 것임.
- 나. 도시건설위원회
 - 건설국소관 추경세출 예산규모는 도로건설 시설비의 토지매입비 1억 2,600만원과 도로정비 소파보수 5억 9,100만원이 되겠으며,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영등포 1동과 당산1동은 본예산과 제1회 추경에 예산 승인하고도 2회 추경까지 요청된 것으로 1회 추경시 보상비 산정을 철저히 했으면 2회 추경까지 아니하여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며, 아울러 기 포설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계획은 자치구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는 반면 세입의 감소를 주의깊게 관찰하여 잘 정돈되어 있는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벽돌식 보도블럭으로 재 포설은 예산낭비임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함.

4. 審査結果 : 원안 의결

'97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138

제출년월일 : 1997년 10월 25일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 세입(보조금, 조정교부금) 증가

2. 주요골자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제2회추경 (증△감)	증감 율(%)	
총계	149,210,842	146,175,146	3,035,696	2.1	
일반회계	117,507,324	114,471,628	3,035,696	2.7	
특별회계	소계	31,703,518	31,703,518	0	
	의료보호기금	1,596,556	1,596,556	0	
	주민소득지원	724,276	724,276	0	
	주차장	29,382,686	29,382,686	0	

- 일반회계 ————— 3,035,696천원
- 보조금 2,340,696천원
- 조정교부금 695,000천원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조사특별위원회조사기간연장의견(안)

의안번호 141

제안년월일 : 1997년 11월 6일
발의자 : 유남열의원외 7인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20조의3 및 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997. 7.14 제50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민원조사특별위원회 조사대상 업무의 과다로 조사기간을 연장코자 함.

2. 주요골자

- 조사대상 관련 업무의 확대와 업무내용의 과다로 당초 조사기간인 '97. 8. 1일부터 '97.11.20일까지 92일간 연장코자 함.

3. 참고사항

가. 민원조사특별위원회 중간결과보고서